

성명서

단속 중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산재판결을 환영한다!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11월 18일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노동자 중국 출신 장슈아이(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부산고등법원 원심을 확정판결한 것이다.

장슈아이씨는 2006년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자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몸 절반을 쓰지 못하게 됐다. 그의 가족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곧바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자가 고용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고용관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다른 심리 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전신마비, 사망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이 책임질 문제'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단속반원들은 정당한 법집행을 했을 뿐이며 이주노동자의 부상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므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듯 당당한 태도를 보여온 법무부는 공포분위기마저 조성하려는 듯 더욱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단속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마석에서는 검경합동 단속을 통해 군사작전을 벌이듯 토끼몰이식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의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해 긴급히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 지난 9월에는 단속되어 보호(?)조치 중이던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 따소에 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강력한 규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의 부상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랑곳 않은 채 단속실적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이주노동자가 당하는 억울한 고통의 일부나마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기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판결을 정부가 받아들여 무리하고 과도한 이주노동자 단속 방식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리한 단속이 계속될 수록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정부당국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고용주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법, 안전관리상의 과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노동관계 개별법에 의해 처벌되기도 한다. 앞으로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단속반의 과실 여부도 주요하게 거론될 것이다.

부디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가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이를 통해 죽음을 부르는 잔인한 단속방식이 즉각 폐기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나 산업재해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잃는 이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조사하여 보상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사냥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1. 산업재해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1월 19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